



: 발주처 홈페이지 [www.psa-ict.co.kr](http://www.psa-ict.co.kr) 자료실에서 세부사항 참조

- (2) 입찰 마감 :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
- (3) 입찰 위원회 : 2025년 11월 마지막 주 예정 [변동가능]
- (4) 입찰 통보 : 발주처 입찰 위원회 개최 후 통보 예정

**4. 입찰 서류 제출처**

입찰 서류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

구분	우편발송 또는 직접방문	이메일 제출
제출장소	제출용 견적서 및 기타 구비서류 봉인 후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입찰함(2층 입구에 위치)에 투입  [발송주소] (22354)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35 인천컨테이너터미널(주) 2층 구매법무팀	발주처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 ( <a href="mailto:tender@psa-ict.co.kr">tender@psa-ict.co.kr</a> ) 로 제출
주의사항	서류는 봉인하여 회사 직인 날인 후, 테이프로 밀봉	입찰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단, 파일 용량이 100M 이상인 경우, 대용량 메일을 이용하여 제출

**5. 구비 서류**

- (1) 입찰 가격서 (별첨) 1부
- (2) 인건비 산출 내역서 (별첨) 1부
- (3) 최근 3년간 사고 내역서 (별첨) 1부
- (4) 사업자등록증 1부
- (5) 인력운영계획서 1부
- (6) 안전관리보건관리계획서 (입찰공고문 제 6 조 2 항 참조) 1부
- (7) 기밀 유지 서약서 (별첨) 1부
- (8)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 (별첨) 1부

**6. 주의 사항**

- (1) 입찰 대상자는 입찰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, 각 페이지 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
- (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하여 발주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, 입찰 대상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[안전보건관리계획서]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. [안전보건관리계획서] 미 제출 시, 업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No.	항 목
-----	-----

1	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
2	안전작업 계획 ( <b>발주처가 작성한 '사전 위험성 평가' 항목을 반드시 포함</b> )
3	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
4	안전보건교육 계획
5	사용기계/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
6	작업관련 실적, 작업자 이력/자격/경력현황
7	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

- (3)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준수하며 입찰 결과에 어떠한 민·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.
- (4)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팀 차준서 부장(032-890-8857) 또는 구매법무팀 김나연 차장(032-890-8908)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
**7. 낙찰 방법 및 통보**

- (1) 입찰 참여 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5 번의 모든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.
- (2) 입찰에 응한 업체 중 발주처 기준에 의거 최적의 업체로 선정하며, 최종 낙찰자는 입찰 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합니다. (단, 선정된 업체의 입찰단가가 발주처 시장 조사결과와 합당하지 않을 시 재입찰할 수 있음)

**8. 입찰 참가 대상**

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업체이며, 발주처 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준수하는 업체

**9. 계약 기간**

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6 년 12 월 31 일 (12 개월)

**10. 기밀 유지 및 제한**

- (1)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입찰 공고문, 관련 서류, 질의응답 등 모든 자료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하며,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(2) 입찰 참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전환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,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제공받거나 접근하게 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.
- (3) 본 입찰 절차, 기술사양, 납품물, 계약 수주 여부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. 언론 발표, 보도자료 배포, 사례 홍보 등 외부 공개 행위는 모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**11. 공급업체 행동강령 준수 (The Supplier Code of Conduct)**

(1) 입찰 참여 업체는 발주처의 「공급업체 행동강령」(Supplier Code of Conduct)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며, 해당 행동강령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. 최신 버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https://service.psa-ict.co.kr/files/homePage\\_files/service\\_file/file/PSA\\_Supplier\\_Code\\_Of\\_Conduct.pdf](https://service.psa-ict.co.kr/files/homePage_files/service_file/file/PSA_Supplier_Code_Of_Conduct.pdf)

- (2) 「공급업체 행동강령」은 발주처의 윤리경영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, 입찰자 및 그 관련 업체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및 법적 행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(3) 입찰 참여 업체는 본인의 사업장, 자회사, 사업부, 계열사, 운영 법인, 협력업체, 공식 대리점 및/또는 하도급업체 등 발주처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주체가 해당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/감독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의 규정 또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 12. 계약 조건 (기본 사항)

- (1) 계약자는 반드시 발주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(2) 계약자는 발주처에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제공합니다. 단, 계약자가 투입한 인력에 대해 발주처가 본 계약 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.
- (3) 계약자 또는 계약자 소속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/사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, 사고/사건 발생한 모든 비용(원상복구 포함)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 또한 발주처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 비용에서 우선 공제 또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.
- (4) 계약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항목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.
- (5) 계약자는 본 계약의 조항, 의무, 조건 등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위약 벌로서 발주처에 귀속하며, 발주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(6) 계약자는 도급업무수행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와 주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체의 노동관계 법령 및 사회보험법령, 산업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 11. 보험가입

### (1) 법정의무보험

계약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력에게 요구되는 법정 보험을 반드시 가입 및 유지해야 합니다.

### (2) 계약이행보증보험

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월 도급액 기준 2 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처에게 제출합니다. 만약 계약자의 과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금은 발주처에게 자동 귀속됩니다.

(3) 영업배상책임보험

- ①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약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처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계약자를 공동 피보험자로 가입합니다. 단, 계약자가 계약자의 비용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, 관련 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②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,
  - 자기 부담금 미만의 사고 금액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합니다.
  - 자기 부담금 이상의 사고 금액은 계약자가 자기 부담금만 부담합니다.
  - 계약자 또는 계약자 소속의 직원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보상은 계약자가 합니다.
- ③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민/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,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발주처는 면책하기로 합니다.
- ④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 누적으로 발주처의 보험 갱신 시, 보험료 증액 등의 손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은 계약자가 전액 보상합니다.

(4) 손해배상

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자 종업원의 재해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, 더불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처의 임직원 및 발주처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자, 기타 발주처에 출입하는 제 3 자 등에게 발생한 인명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
12. 계약 해지

- (1) 계약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, 계약에 위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,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(2)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서비스 지연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발주처는 계약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---

**DY BAK / Head of Procurement**